

# 삼척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996년 8월 26일

총무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8월 20일 삼척시장 제출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6년 8월 20일
- 다. 심사일자 : 제16회 삼척시의회 (임시회)  
총무위원회 제1차회의('96.8.26.)에서 심사의결

#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.

- 공개대상은 재방재정 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며  
    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 
    규칙으로 정함.
-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 청구시 이에 응하도록  
    함.

### 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홍용섭)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모든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개  
    를 일상화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 상황도 주민에게  
    널리 공개하므로써 시의 살림살이를 주민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 
    조치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만,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느  
    냐 하는 공개방법이며,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 
    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,  
    다수의 주민이 재정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규칙  
    으로 정하는데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으며,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 
    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IV. 토론요지 : 없음

### V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# VI. 심사결과 :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### 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.